

『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 따라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아동참여위원회 임기 변경(안 제26조)
 - 아동참여위원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
- 아동권리옹호관 관련 조항 신설(안 제36조)
 -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 위촉, 임기, 활동지원,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조사, 구제 등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국제조약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아동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.
-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아동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, 임기, 활동지원과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조사, 구제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아동참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흐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책발굴 및 의견제시 등 아동참여위원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.
-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운영체계 정립에 관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,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,
-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,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 실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